

물질안전보건자료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제품명 : KUMHO PPG 3017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자료없음
- 사용상의 제한 : 제한없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금호석유화학(주) 울산수지공장
-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45-25
- 담당부서 : 품질보증팀
- 담당자 :
- 전화번호 : 052-279-8852
- 팩스번호 : 052-279-8840
- 긴급연락번호 :

-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
- 주소 :
- 담당부서 :
- 담당자 :
- 전화번호 :
- 팩스번호 :
- 긴급연락번호 :

2. 유해·위험성

가. 유해·위험성 분류 정보 :
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(반복노출) : 구분 2 (중추신경계, 심부정맥)

물질안전보건자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 :



○ 신호어 : 경고

○ 유해 · 위험 문구 :

-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중추신경계, 심부정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○ 예방조치문구 :

- 예방
 - P260 증기·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말 것
- 대응
 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할 것
- 저장
 - 해당문구없음
- 폐기
 -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·용기를 폐기할 것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 :

- NFPA 등급(0~4단계) : 보건=1, 화재=1, 반응성=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 학 물 질 명	CAS No./ECL No./EINECS No.	함유량(%)
Polypropylene Glycol	25322-69-4/KE-20228/500-039-8	99.9
Additives	영업비밀	0.1~2

※ 식별번호 : ECL(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)

EINECS(유럽 기존화학물질 목록)

물질안전보건자료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 갔을 때 :

- 15분 이상 다량의 물로 눈을 씻어낼 것
- 자극이 계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피부 접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낼 것
- 자극이 계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

다. 흡입했을 때 :

- 환자를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이동시킬 것
- 만일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
- 만일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것
- 필요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

라. 먹었을 때 :

- 섭취시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
- 의식이 없을 경우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말 것
-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~4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할 것
- 만일 본 제품을 다량 섭취한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할 것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 자료없음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할 것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 :

- 적절한 소화제 : 물 안개, 이산화탄소, 건조화학적제, 포말
- 부적절한 소화제 : 직수
- 대형 화재시 : 내알코올성 포말

물질안전보건자료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:

- 열분해 생성물 : 이산화탄소, 일산화탄소
- 화재 및 폭발 위험 :
 - 화재에 의해서 자극성 또는 독성의 가스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
 -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
 -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「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」에 기재된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화염에 노출된 용기는 물을 살수하여 냉각시킬 것
- 위험이 없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
- 물을 이용한 진압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
-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
- 바람을 등지도록 하고 저지대로부터 피할 것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

- 「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」에 기재된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눈 및 피부 접촉을 피할 것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
-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할 것
- 열, 불꽃, 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할 것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킬 것.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
- 소량 누출 시 :
 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
 -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
 - 해당지역을 환기시키고 누출지역을 씻어낼 것
- 다량 누출 시 :
 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

물질안전보건자료

- 인근 하천 및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방을 쌓을 것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킬 것
-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
- 흡착제와 다른 폐기물은 적합한 용기에 밀봉하여 처리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「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」에 기재된 적절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취급할 것
- 열, 스파크, 불꽃 및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
- 취급 후 철저히 씻을 것

나. 안전한 저장방법 :

- 습기가 있는 곳에 저장하지 말 것
- 열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저장할 것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

- 국내 규정(산업안전보건법) : 해당없음
- ACGIH 규정 : 해당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 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다. 개인 보호구 :

- 호흡기보호 :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.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 호흡보호구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. 사용

물질안전보건자료

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

※ 대피할 경우

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가스용)
-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- 공기여과식 호흡기 보호구(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)

※ 미지농도 또는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-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- 눈보호 :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. 작업장 가까운 곳에 긴급세안시설 및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을 설치할 것
- 손보호 :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. 가열된 제품을 취급시에는 내열성 장갑을 착용할 것
- 신체보호 :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

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: 성상 - 액체, 색상 - 자료없음
- 나. 냄새 : 약한 냄새
- 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- 라. pH : 자료없음
- 마. 녹는점/어는점 범위 : 180~200°C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자료없음
- 사. 인화점 : 239°C
- 아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 : > 1.0
- 타. 용해도 : 불용성
- 파. 증기밀도 : 해당사항 없음
- 하. 비중 : 1.005~1.010
- 거. n·옥탄올/물 분배계수 : 자료없음
- 너. 자연발화 온도 : 자료없음
- 더. 분해 온도 : 해당없음
- 러. 점도 : 500~540 cps at 25 °C
- 머. 분자량 : 3500 g/mol

물질안전보건자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:

- 권장된 사용과 취급시 상온·상압하에서 안정함

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
- 유해한 중합반응은 일어나지 않음

다. 피해야 할 조건 :

- 고온

라. 피해야 할 물질

- 강산, 강산화제, 알칼리 또는 알칼리성 물질(구리, 아연 또는 황동)

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 : 자료없음
- (경구) : 자료없음
- (눈·피부) : 자료없음

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
- 급성 독성 : 자료없음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- 발암성 물질 :
 산업안전보건법 : 미규정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(반복노출) : 구분 2 (중추신경계, 심부정맥)

물질안전보건자료

○ 흡인 유해성 : 자료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 : 해당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 · 육생 생태독성 :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 :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 :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할 것
- 빈 용기를 처분할 때에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처리할 것
-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소각 처리할 것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: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
물질안전보건자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폴리프로필렌 글리콜(Polypropylene glycol)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:

1)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A

2)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F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에 적용대상임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물질에 해당되지 않음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[노동부고시 2008-26]에 의한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되지 않음
-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제166조 관련 별표7]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음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해당되지 않음
-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[개정2008.12.31, 별표 1]에 의거 제4류 위험물(인화성 액체) 중 제 4석유류 [지정수량 : 6,000리터]에 해당됨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에 해당됨

물질안전보건자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없음
- EU 분류정보 :
 - 확정 분류 결과 : 미분류
 - 위험 문구 : 미분류
 - 예방조치 문구 : 미분류
- 미국 관리 정보
 - OSHA 규정(29CFR1910.119) : 해당없음
 - CERCLA 103 규정(40CFR302.4) : 해당없음
 - EPCRA 302 규정(40CFR355.30) : 해당없음
 - EPCRA 304 규정(40CFR355.40) : 해당없음
 - EPCRA 313 규정(40CFR372.65) : 해당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노동부고시 제09-68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금호석유화학(주)에서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

나. 최초 작성일자 : 2016년 8월 22일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 개정된 적 없음

라. 기타 : 자료없음